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152

발의연월일: 2024. 8. 23.

발 의 자:임미애·김병기·김용민

김 현 • 박수현 • 박희승

복기왕 · 신정훈 · 오기형

오세희 • 윤건영 • 윤준병

이광희 • 이기헌 • 이병진

최기상 • 황정아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종합적·자율적 수행가능성 및 주민의 편익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에서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또는 사무위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사무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제·개정 등 중요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제도는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
에 그 근거를 둠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다양한 광 역 협력 수요 대응을 위한 기존 협력사업(MOU)은 구속력이 낮아 미이행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협약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변 경·폐지에 관한 사항
 - 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지도 · 감독에 관한 사항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안에 대한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협의요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법령안이 제 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및 제12조에 따른 사무처리 기본 원칙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해당 법령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사전협의를 위한 세부 검토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4조의2(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약)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 1.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 및 내용
 - 2.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 3. 사무처리 비용의 조달 및 분담 기준
 -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 5. 공공협약의 변경 및 종료
 -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 강화 또는 공공협약의 효율적 이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공공협약안을 정한 후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공공협약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해당 공공협약의 당사자 중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공공협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내용을 각각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국가의 주요 시책 또는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 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특히 필요한 경우
- 3.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무를 추진하는 경 우
- 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를 구축・강화하

-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 사항의 내용 및 범위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 3. 사무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 4.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
- 5. 협약의 변경 및 종료
- 6.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 강화 또는 협약의 효율 적 이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신 설> 제11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② 조망해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저혐의가 필요하 경에 따른 사저혐의가 필요하 경기 	현 행	개 정 안
아 해당 법령안에 대한 협의요 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협의요청서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법령안 이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제11조의2(자치분권 사전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위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해당 법령안에 대한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행정안전부장관은해당법령안

<신 설>

기본원칙 및 제12조에 따른 사 무처리 기본원칙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그 검토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검토의견을 통보반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이를 해당 법령안에 반영하여야 하며, 반영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사전협의를 위한 세부 검토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의2(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약)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협약"이라 한 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 및 내용

- 2.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업무 범위
- 3. 사무처리 비용의 조달 및 분 <u>담 기준</u>
-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 5. 공공협약의 변경 및 종료
-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 강화 또는 공공
 협약의 효율적 이행 등을 위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하 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공공협 약안을 정한 후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 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공공협약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 해당 공공협약의 당사자 중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생 략)

<신 설>

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공공협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내용을 각각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공협약의 체 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무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 2. 국가의 주요 시책 또는 균형 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특히 필요한 경우

<u><신 설></u>

- 3.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 이 특히 필요한 사무를 추진 하는 경우
- 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 상호 간 협력관계를 구축

 ·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력 사항의 내용 및 범위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및 업무 범위
- 3. 사무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 <u>방안</u>
- 4.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5. 협약의 변경 및 종료
- 6.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의 협력관계 강화 또는 협약의 효율적 이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